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5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허성무 · 유동수 · 장철민
어기구 · 안태준 · 오세희
이주희 · 정태호 · 이수진
이언주 · 윤준병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에 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초상·음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성·모사·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인지도와 신뢰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피해가 반복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 중 “표지”를 “표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통신판매중개업자의 협조의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게시물 또는 콘텐츠의 게시·유통 현황
2. 게시자 또는 판매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거래 또는 광고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출받은 자료 중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관,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까지, 타목”을 “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부정경쟁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타. ----- ----- ----- -----표지(「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 · 모사물을 포함한다)----- ----- ----- ----- ----- -----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통신판매중개업자의 협조의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게시물 또는 콘텐츠의 게시·유통 현황
2. 게시자 또는 판매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거래 또는 광고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출받은 자료 중 영업비

제18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생략) ⑤·⑥ (생략)	<u>밀,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관,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8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u>까지</u>----- ----- -----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